

미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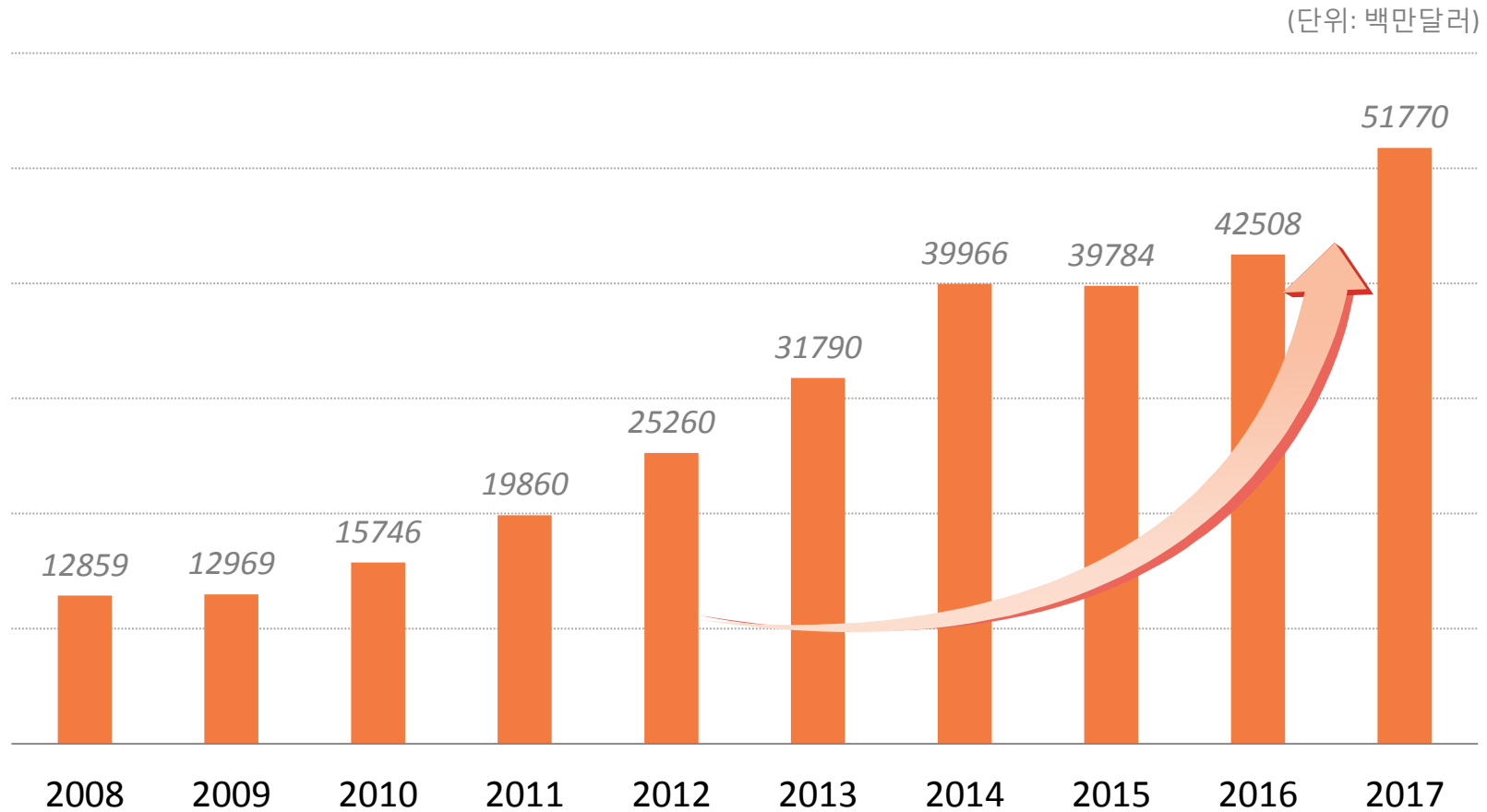
2019. 4. 9.



목차

- I. 한국기업들의 미국 FDI 투자
- II. 한국기업의 US M&A
- III. CFIUS란 무엇인가
- IV. FIRRMA의 제정
- V. 시사점

한국기업들의 미국 FDI 투자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국기업의 US M&A



BUYER	TARGET	DEAL VALUE
Hanon Systems	Magna Powertrain Inc.	\$1.23 billion
Samsung Electronics Co Ltd.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8.04 billion
DoubleUGames Co Ltd.	Double Down Interactive LLC	\$825.6 million
Netmarble Games Corporation	Kabam	\$ 1 billion
LS Cable Ltd.	Superior Essex	\$ 900 million
Doosan Infracore Co., Ltd.	Compact equipment business division of Ingersoll-Rand	\$4.9 billion
LG Household & Health Care Ltd.	Johnson and Johnson Reach Brand	<i>undisclosed</i>
SK Global Chemical Co Ltd.	The Dow Chemical Co Ethylene	\$370 million
CJ Logistics Corp.	DSC Logistics Inc.	\$216.36 million
SK Innovation Ltd	Longfellow Nemaha LLC	\$280.2 million
KCC Corporation TS, Wonik QNC Corporation TS , SJL Partners	MPM Holding Inc.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Inc.)	\$3.13 billion
Vestas Qualified Investors Private REIT	Safeco Plaza, Seattle	\$387 million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Co.	Hyatt Regency Waikiki Beach	\$780 million
SK E&S Co Ltd.	Continental Resources	\$360 million

CFIUS란 무엇인가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미국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

예시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CFIUS에서 제기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Broadcom의 Qualcomm 인수합병을 저지했던 Case

상임위원 (Permanent members)

미재무부장관	국방부	국토안보부
사법부	국무부	에너지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비상임위원 (Observers/Ad hoc)

예산청	국가경제회의(NEC)
경제자문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FIRRMA의 제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제정배경

2018년 중국의 성장에 따른 미국의 경제, 안보에의 영향에 대한 우려로 CFIUS의 규제영역을 보다 넓혀 제정됨

		변경 전	변경 후
규제대상		경영권 획득	경영권 획득 + 사회기반시설, 핵심기술, 미국시민 개인정보 수집/관리 분야 등에 대한 소수지분 투자 포함
조사기간	Phase 1 심사	30일	45일
	Phase 2 조사	45일	60일
자진신고 여부		자진신고 (Voluntary Filing)	신고의무 부과 (Mandatory Filing)

시사점



CFIUS 및
FIRRMA 규제대상
확인

- 경영권 획득거래 뿐 아니라 미국기업에 대한 모든 거래 형태가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규제대상 사전 확인 필요



Timeline 확보

- 거래 일정 수립 시 CFIUS 신고 및 승인기간 충분히 고려
- Deal 확실성 및 조사 리스크를 고려하여 자진신고 고려



CFIUS 전문로펌
선임

- 미재무부와 사전 협의 중요
- Mitigation plan 제안/ CFIUS의 요청사항에 즉각적으로 응대 필요
- 미국Public에 적합한 세심한Communications Plan

감사합니다

변 섭 준

| sjbyun@kimchang.com

| 02-3703-1289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하는 법률의견이나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고,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닐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저희 사무소에 있으므로 저희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 복제,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사무소 또는 발표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IM & CHANG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 03170

Tel: 02) 3703-1114 Fax: 02) 737-9091 / 9092 E-mail: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